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제2023-782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(경북의성 국민임대주택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에 따라 경북 의성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18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사 업 명 : 경북의성 공공주택 건설사업 (국민임대)

2. 사업시행자 (변경)

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, 의성군 군수 김주수 (당초)

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, 의성군 군수 김주수 (변경)

○ 주 소 (변경없음) : (LH) 경남 지주시 충의로 19 (충무공동), (의성군)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

3. 사업개요 (변경)

구분	당초	변경	비고
대지위치	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3번지 일원	좌 동	-
사업면적(㎡)	3,943.00	3,818.30	감 124.7
대지면적(㎡)	3,943.00	3,818.30	감 124.7
연면적(㎡)	2,530.27	2,530.42	증0.15
사업규모	공동주택 2개동 (국민임대 42세대, 지상6층), 부대시설	좌 동	-
구조	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, 필로티 일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	좌 동	-
사 업 비 (주택도시자금)	8,922,093천 원 (2,200,924천 원)	8,922,159천 원 (2,200,990천 원)	증66원

4. 사업기간 : 사업승인 고시일 ~ 2024. 12. (변경없음)
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·지번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
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를 기재한 서류 : [붙임1] (변경)

6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(변경)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
(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수립) 결정 : [붙임2] (변경)

7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음

8. 기 타 : 관계 도서는 의성군 민원과 및 지역재생과,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(053-603-2562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. 끝.

[붙임1]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·지번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를 기재한 서류

○ 변경

구분	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관계	
합계	기정				3,943.0	3,943.0	의성군	-	-	-	-	지구 내
	변경				3,825.0	3,818.3	의성군	-	-	-	-	지구 내
1	기정	의성군 용기리	457-79	도	455	455	의성군	-	-	-	-	
	변경	의성군 용기리	457-80	도	349	349	의성군	-	-	-	-	457-79번 에서 분할 (편입)
2	기정	의성군 용기리	464-1	도	12	12	의성군	-	-	-	-	
	변경											
3	기정	의성군 용기리	466-14	답	1,383	1,383	의성군	-	-	-	-	
	변경	의성군 용기리	466-14	답	1,383	1,376.3	의성군	-	-	-	-	감 6.7m ²
4	-	의성군 용기리	466-15	답	78	78	의성군	-	-	-	-	
5	-	의성군 용기리	482-1	대	776	776	의성군	-	-	-	-	
6	-	의성군 용기리	483	대	659	659	의성군	-	-	-	-	
7	-	의성군 용기리	483-2	잡	580	580	의성군	-	-	-	-	

[붙임2]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위 치	면적 (m ²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①	의성 안계 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3번지일원	3,943.0	감)124.7	3,818.3	국민임대

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 분	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면 적	결정(변경) 사유
변 경	①	의성 안계 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• 3,943.0m ² →3,818.3m ² 감) 124.7m ²	○ 의성군 도로 사용을 위한 분할 측량 시행 및 결과 반영하여 구역계 변경

다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(게재생략)

2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의성안계 1지구	주거 지역	합 계	3,943.0	-	3,943.0	100.0	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라 기존 용도지역 (제1종일반주거지역)으로 환원
		제1종일반주거지역	-	증)124.7	124.7	3.2	
		제2종일반주거지역	3,943.0	감)124.7	3,818.3	96.8	

나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위 치	용도지역	면 적(㎡)		용적률	결 정 사 유
			기정	변경		
①	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3 번지 일원	제2종 일반주거지역	3,943.0	3,818.3	200% 이하	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및 의성군 도로 사용을 위한 분할측량 결과 반영

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: (변경없음)

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의성 안계1지구

① 공동주택용지(국민임대)

구분	도면 번호	가 구			획 지				비 고
		가구 번호	면 적 (㎡)		획지 번호	위 치	면 적 (㎡)		
			기정	변경			기정	변경	
공공주택 용지	1BL-1	1BL	3,943.0	3,818.3	1	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83번지 일원	3,943.0	3,818.3	

4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 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가. 의성 안계1지구(변경없음)

① 공동주택용지(국민임대)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	계 획 내 용	비 고
1BL-1	공공 주택 용지	용 도	허 용	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의 공공주택 「주택법」 제2조 13호에 의한 부대시설 「주택법」 제2조 14호 가목의 복리시설	
			불 허	허용 용도 이외의 시설	
		건폐율		60%이하	
		용적률		250%이하	
		높 이		8층 이하	
		배 치		-	
		형 태		-	
		색 채		-	
		건축선		-	